같이 누리는 건강보험, 가치있는 건강한 삶!

국민건강보험공단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업무처리 협조요청

1. 관련
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(2022. 12. 27.)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   나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의료비지원실 2022-제11호(2022. 12. 28.) '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공고'

2.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('23.1.1.) 이후 산정특례 적용 관련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현장에서 **기준에 맞게 적용**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가. 주요 변경내용 … '23. 1. 1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복지부 고시) 개정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특례 적용범위 확대	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	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,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**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·수술 관련 진료**
행정해석 추가		(Q)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·수술 진료분 (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) (A)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**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·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분은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** 가능 ※ (예시)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,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

   ※ 혈관 시술 · 수술을 시행한 외래진료 및 입원기간만 적용 가능하며, **혈관 시술 · 수술 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 불가능**

   나. 다빈도 질의사항: [붙임] 참고

   ※ 본 내용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.
   - 글번호 544(2023. 3. 21.) '(건강보험)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'

붙임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안내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신장학회장, 대한투석혈관학회장

대리	윤상아	팀장	송지원	부장	이경원	전결	7/31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1010 (2023.8.1.) 접수 ()

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, 21층 (반곡동,국민건강보험) / http://www.nhis.or.kr

전화 033-736-4648 전송 033-749-9616 / 180413@nhis.or.kr / 공개